2021 부동산 입법포럼 패널원고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해외사례 관점)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다. 호주의 경우 8개 주 중 4개 주(2004년 준주의 '형법', 2017년 퀸즐랜드주 '산업안전보건법', 2019년 노던 준주와 빅토리아주의 '산업안전보건법')만이 형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캐나다는 형법상 의무주체에 단체를 포함하고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 캐나다는 OECD 국가 가운데 사고사망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1. 개인처벌에 관한 사례

영국은 개인에 대한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법인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기업의 경영책임자 같은 개인에 대한 처벌은 없다.

영국에서 '기업과실치사법'은 법인에 대한 처벌만이 가능하다. 산업재해 발생으로 기업의 경영진을 포함한 개인에 대한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사고의 원인이 해당 기업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정될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개인의 위반행위가 아닌 기업의 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다. 기업 등 수규자의 의무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기존 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기업과실치사법' 제정으로 인해 추가된 수규자의 의무는 없다.

2011년 '이튼 앤 코츠월드 홀딩'이란 회사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나자 385만 파운드의 벌금을 맞았다. 영국은 근로자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기업과실치사법' 시행 직후인 2009년 0.5명으로 시행 직전인 2006년 0.7명보다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법으로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받은 28개 기업 모두가 중소 업체였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파산 내지 영업이 중단됐다.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 도입과는 별개로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제도 등의 운용을 통해 산업재해를 낮추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때문에 '기업과실치사법' 도입에 따른 재해 감소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은 페리호 전복 사고와 철도 충돌사고로 많은 시민이 숨지면서 이 법의 제정이 본격화했다.

1987년 3월 6일에 영국 도버항과 벨기에 제브뤼헤항 사이를 운행하는 Herald of Free Enterprise호가 제브뤼헤 항을 벗어나자마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0여 명이 숨졌다. 보조갑판장이 선수문을 미처 닫지 않은 채 항해에 나선 게 사고원인이었다. 이 사건으로 선박 소유주인 P&O 유러피언 페리사와 임원들이 살인죄로 기소됐다. 그러나 91년 무죄로 풀려났다.

97년 9월 19일에는 영국 사우스올에서 스완지와 런던 패딩턴 구간을 운행하던 고속열차가 화물열차와 충돌했다. 7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 자동경보장치 결함 등으로 기관사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

해 벌어진 사고였다. 그레이트 웨스턴 열차 회사는 '형법'상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만 1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기업과실치사법'이 논의됐다.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진은 거시적인 기업운영이나 의사결정에 개입할 뿐이다. 이 때문에 구성원의 행위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경영진에게 있다고 묻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07년 제정돼 2008년 4월 6일 시행됐다. 이 법은 사망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을 우선으로 한다.

실제로 2012년까지 사망사고로 기소된 건수는 104건이었다.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기업과실치사법'으로 유죄가 선고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2017년 2월 17일 최초로 이 법이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된 기업이 나왔다. 코스트 월드 지오 테크니컬 홀딩스(CGH)였다. 2008년 9월 지질학자가 작업하다 3.8m 아래 구덩이에서 지반침하가 일어나 질식사했다. 당시 관리자도 없었고,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법인에 38.5만 파운드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후 1인 기업이던 농장에 벌금이 내려지는 등 모두 법인에 벌금을 물렸다. 경영책임자와 같은 개인에 대한 처벌은 없다.

빅토리아 로퍼 영국 노섬브리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 법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이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파산 내지 영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사망자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제임스 J 고버트 국립에식스대 법대 교수는 '기업과실치사법'을 기업 과실의 독특한 성격과 기업의 성질을 이해하려는 정부의 진지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산업안전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호주는 처벌의 하한형이 없다.

호주는 연방법상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처벌법'과 같은 유사한 법은 없다. **다만 8개 주 중 4개 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개 주에서 제정한 기업과실치사 관련 제도는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을 뿐 핵심 내용은 유사하다. **호주는 처벌 대상으로 국내와 같이 법인과 고위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지만, 개인 처벌의 경우 하한형은 없이 상한형만 명시**하고 있다.

이들 4개 주중에 준주는 중대재해와 관련, 기업주와 법인을 처벌할 경우 까다로운 범죄 성립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①심각한 부주의 ②고용한 근로자의 사망에 ③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을 경우다. 노던 준주는 이보다 엄격해서 ①안전보건의무를 가진 법인이나 고위경영진이 ②의도적이고 ③심각한 부주의로 ④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실상 안전수칙을 아예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근로자를 숨지게 할 의사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힘들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망사고에 대한 형벌은 무겁다. 호주수도 준주와 퀸즐랜드주는 경영자에게 최고 징역 20년, 빅토리아주는 징역 25년, 노던 준주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벌금도 무겁다. 개인 또는 법인에 2.6억~134억 원을 물린다. 범죄 성립 조건에는 심각한 부주의로 고용한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캐나다도 처벌의 하한형이 없다. 캐나다의 중대재해법은 '웨스트레이법'이다.

1992년 웨스트레이 석탄 광산 폭발사고로 26명의 광부가 숨졌다. 사고 이전에 광부들은 매탄가스에 의한 폭발 위험에 대해 관리자와 경영진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묵살 당했다. 희생자 가족들이 관리자 2명을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처벌론이 대두했다. 10여 년의 논의 끝에 2004년 웨스트레이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뒤 2014년까지 10년 동안 기소된 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산재 사고에는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기존의 '직장 안전과 건강 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는 기업 처벌 강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처벌 강화로 인한 효과가 불명확하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사망사고 국가별 사업주 처벌 수준	
한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인은 10억원 이하)
일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550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1만 달러(1,200만원) 이하의 벌금
독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영국	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 없는 벌금(매출액 1.0~7.5% 수준)
싱가포르	2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만 싱가포르달러(1억7천만원) 이하 벌금형
프랑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9천유로(1,170만원)의 벌금
캐나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캐나다달러(8,700만원)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 도급인의 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산재사망 시 책임 사례

영국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구분되어 있다. 영국은 도급인의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기업과실치사법'으로 법인 처벌이 가능하다.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는 도급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3. 결론 시사점

한국의 기존 '산업안전법'은 주요국보다 처벌규정이 이미 강력하다. 새로운 '중대재해법'에 의한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는 해외사례에서 보다시피 불확실해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규 법 제정 보다, 산업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하다.